

제416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25. 2. 11. ~ 2. 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제 416회 임시회

(2025. 2. 11. ~ 2. 21.)

# 제416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가 어느 해보다 더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위협받았고,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의 늪에 빠져 위축됐습니다.  
민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를 온전하게 되돌려 놓고 얼어붙은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얼굴에 반드시 환한 웃음을 되찾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일주년이 되었습니다.  
확대된 자치권한이 조속히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집행부와 파트너십을 갖고 전북 몫을 찾고 지키기 위해서 경제위기,  
인구소멸, 균형발전등 전북도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각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는 처음 각오 그대로 한계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도전경성’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그 첫 도전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입니다.  
‘한 사람이 꿈꾸면 그것은 꿈이지만 모두가 함께 꿈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라면 하계올림픽 유치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명품도시로 성장하는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힘껏 돕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큰 꿈을 전북에서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살고 싶은 청년문화 복지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합니다.

기업과 사람이 모여 지역소멸을 막고 모두가 행복한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도정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부탁드립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새해 학력신장과 공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우리 학생들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써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북교육복지를 구현해 주시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적극 소통하여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시책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새해 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만족할 정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습니다. 양 기관에서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새해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40명의 의원은 올해도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토대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정과 교육·학예행정 운영의 동반자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실현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승 우

# 목 차

## 제416회 임시회

###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7
2. 회기 및 운영 .....	7
3. 의 사 일 정 .....	8

###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16
2. 처 리 현 황 .....	17

###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	91
2. 처 리 현 황 .....	91
3. 위원회별 처리현황 .....	92

###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93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	93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	94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	94

# I. 집회 및 의사일정

##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5. 2. 4.(화)
- 집회 일자 : 2025. 2. 11.(화) 14:00
- 집회 사유
  - 2025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시책방향 청취
  -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 2025년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 2. 회기 및 운영(제12대 후반기)

- 회 기 : 2025. 2. 11. ~ 2. 21.(11일간, 2025년 : 11일, 총누계 345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연 누계 : 2, 총 누계 72)
  - 상임·특별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 육	특 별
제416회 임사회	24	1	4	5	5	5	4	0
2025 년도	24	1	4	5	5	5	4	0
총 누 계	131	8	24	23	23	23	22	8

### 3. 의사일정

####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2.11.(화) 14:00	<p><b>&lt; 제1차 본회의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회 식</li> <li>○ 간부소개</li> <li>○ 5분 자유발언(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난이 의원, 김성수 의원, 운영숙 의원, 김명지 의원, 오은미 의원, 김동구 의원, 이명연 의원, 윤정훈 의원, 강태창 의원</li> </ul> </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li> <li>2.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li> <li>3.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li> <li>4.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li> <li>5.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li> <li>6.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li> <li>7.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된 2기 탄핵위 구성 촉구 건의안</li> <li>8. 정부의 일방적인 비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li> <li>9. 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li> <li>10. 서해안 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li> <li>11.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li> <li>12. 본회의 휴회의 건</li> </ol>	
2.21.(금) 14:00	<p><b>&lt; 제2차 본회의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분 자유발언(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기 의원, 진형석 의원, 정종복 의원, 오현숙 의원, 김이재 의원, 임종명 의원, 강동화 의원, 염영선 의원, 국주영은 의원, 이병도 의원</li> </ul> </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li> <li>2.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li> <li>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5.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li> <li>6.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ol>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7.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3.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6.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3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생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 5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 54.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55.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6.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57.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 58.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9.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2. 11.(화) 09: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li> <li>○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li> <li>○ 방위산업 기업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li> <li>○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li> <li>○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 - 의회사무처, 정무수석, 정책협력관</li> </ul>	
기획행정 위원회	2.12.(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대변인,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li> <li>○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기획조정실 업무보고 후)</li> <li>○ 대변인 소관 의안심사(대변인 업무보고 후)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감사위원회 업무보고 후)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2.13.(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자치행정국,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li> <li>○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후)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li> <li>○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심사(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 후) -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2.14(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li> <li>○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심사(특별자치교육협력국 업무보고 후) -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li> </ul>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li> <li>○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안심사(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후)</li> <li>-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협약 보고</li> </ul>	
	2.17(월)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전주)</li> <li>- JB지산학협력단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 확인</li> </ul>	
농업복지 환경 위원회	2. 11.(화) 16: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li> <li>-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li> <li>○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심사</li> <li>-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li> <li>○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심사</li> <li>-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2. 12.(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li> <li>-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li> </ul>	
	2. 13.(목)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li> <li>- 복지여성보건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여성가족재단</li> </ul>	
	2. 14.(금)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li> <li>-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군산의료원</li> <li>- 남원의료원</li> </ul>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 17.(월) 10:00	5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의정활동 - 남원의료원	
경제산업 건설 위원회	2. 12.(수) 10:00~	1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기업유치지원실 ○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신용보증재단	
	2. 13.(목) 10:00~	2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새만금해양수산국 ○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14.(금) 10:00~	3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미래첨단산업국 ○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2. 17.(월) 10:00~	4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자동차융합기술원 - 전북테크노파크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 18.(화) 10:00~	5	○ 현지의정 활동 - 전북테크노파크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센터 등 방문(완주)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2. 11.(화) 16:00	1	○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12.(수) 10:00	2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도민안전실 - 소방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2. 13.(목) 10:00	3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문화체육관광국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 14.(금) 10:00	4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 17.(월) 10:00	5	○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 현지의정활동 -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부지	
교 육 위 원 회	2.12.(수) 10:00	1	○ 정책질의 (부교육감) ○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정책국, 대변인)	
	2.13.(목) 10:00	2	○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행정국, 감사관) ○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14.(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6개 학생교육문화관)</li> <li>○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7개 원)</li> <li>○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8개 군 교육지원청)</li> <li>○ 202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6개 시 교육지원청)</li> </ul>	
	2.18.(화) 10:3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의정활동</li> <li>○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8개 군 교육지원청)</li> <li>○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6개 시 교육지원청)</li> <li>○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 독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더십 교육 지원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급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ul> </li> <li>○ 현지의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체육고등학교(완주)</li> </ul> </li> </ul>	

## Ⅱ. 의안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16회 (2025. 2. 21.기준)

구분	계	조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계	금회	72	51	22	29			2		17	2	
	누계	1350	650	309	338	3	7	0	343	52	221	77
의회	소계	금회	58	39	20	19					17	2
		누계	805	501	287	213	1	7	0	5	0	221
	의원	금회	57	38	20	18					17	2
		누계	768	491	285	205	1	0	0	0	218	59
	위원회	금회	1	1		1						
		누계	37	10	2	8	0	7	0	5	0	3
도지사	금회	9	7	2	5			2				
	누계	417	92	14	78	0	0	0	301	21	0	3
교육감	금회	5	5		5							
	누계	128	57	8	47	2	0	0	37	31	0	3

## 2. 처리현황

### ○ 총 괄

제416회 (2025. 2. 2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72	70	67	1		1		1	4	
	누계	1350	1341	1214	79	0	22	0	24	13	
조 례 안	소계	금회	51	49	46	1		1		1	2
		누계	650	646	583	39	0	5	0	17	6
	의회	금회	39	37	35	1				1	2
		누계	501	498	454	29	0	0	0	13	5
	도지사	금회	7	7	6			1			
		누계	92	92	79	6	0	3	0	4	0
	교육감	금회	5	5	5						
		누계	57	56	50	4	0	2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7	7	7	0	0	0	0	0	0	
규 정 안	금회										
	누계	0	0							0	
승인동의안	금회	2	2	2							
	누계	342	342	296	23	0	17	0	6	0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53	53	38	15	0	0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17	17	17						2	
	누계	221	216	213	2	0	0	0	1	7	
기 타 의 안	금회	2	2	2							
	누계	77	77	77	0	0	0	0	0	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54	50					2		54	47	1				5
	누계	1060	640	0	0	338	52	24	6	1050	923	79	22	21	0	16
의회운영 위 원 회	금회	3	1					2		3	1					2
	누계	39	15	0	0	0	0	24	0	34	28	4	0	0	0	7
기획행정 위 원 회	금회	10	10							10	10					
	누계	199	143	0	0	55	0	0	1	197	183	8	0	6	0	3
농업복지 환 경 위 원 회	금회	9	9							9	8					1
	누계	190	138	0	0	52	0	0	0	190	173	2	3	11	0	1
경제산업 건 설 위 원 회	금회	13	11			2				13	11		1			1
	누계	261	114	0	0	145	0	0	2	261	224	20	14	2	0	1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금회	6	6							6	6					
	누계	145	96	0	0	49	0	0	0	144	131	8	3	2	0	1
교 육 위 원 회	금회	13	13							13	11	1				1
	누계	174	134	0	0	37	0	0	3	172	147	22	2	0	0	3
특 별 위 원 회	금회															
	누계	52	0	0	0	0	52	0	0	52	37	15	0	0	0	0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미			
		계	조	규	규	승인동의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결		부			철	료	상
											원	수						
총	금회	18	1					17	2	18	18							
	누계	291	10	7	0	5	0	197	72	291	290	0	0	1	0	0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미			
		계	조	규	규	승인동의	예산결산	건의결의	기타의안	계	가결		부			철	료	상
											원	수*						
총	금회	66	47			2		15	2	66	65	1						
	누계	1290	621	8	0	319	52	213	77	1308	1211	79	13	5	0	0		

\* 위원회 수정안 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안

제 출 자	김희수 의원 (찬성의원 14명)		제 출 일 자	2025. 1. 1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05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문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문화자치 구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문화자치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
- 다. 문화주체의 의견제시 사항 예시(안 제5조)
- 라. 문화자치 원탁회의의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방위산업 기업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김희수 의원 (찬성의원 14명)		제 출 일 자	2025. 1. 1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보류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전차, 전투기, 통신 장비 등 군수품을 생산하는 방위 산업은 이른바 K방산으로 불리며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전북특별자치도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방위산업 시험·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 기업은 4개 사로 전국 방위산업 기업체 수(83개 사)의 4.8%에 불과하며, 매출액은 425억원으로 경상남도 대비 0.8% 비중에 그침
- 라. 전북특별자치도는 특화산업인 탄소산업을 방산산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체계산업 선점 및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바 지역적 장점을 활용한 체계 맞춤형 방위산업 정책 마련 및 방위산업 기업 유치가 필요함
- 마. 이에 「방위산업 기업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위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성공적·안정적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1. 2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구축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부지 중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지분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정기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1.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15호

□ 제안이유

가. 2026년 1월 1일부터 362개 대장들의 임기(3년)가 동시에 시작하는 제도 시행 전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를 정비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정적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하여 부칙을 수정함(안 부칙 제2조)  
 나. 조례 별지 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변경함(안 별지 제13호서식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2. 28.		공 포 번 호	제5692호

□ 제안이유

- 가. 외부 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인원을 증원하고자 함.
- 나. 시민감사관 활동 지원 및 각종 제보·민원 등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시간 선택제임기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민감사관 운영 목적 변경(안 제1조)
- 나. 시민감사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다.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변경·신설(안 제3조)
- 라. 시민감사관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변경·신설(안 제4조)
- 마. 조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 바. 시민감사관 직무 근거에 관한 변경 및 신설(안 제7조)
- 사. 제8조 삭제
- 아. 시민감사관의 책무성 강화(안 제9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2. 28.		공 포 번 호	제5693호

□ 제안이유

- 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복귀를 지원하여, 학습 연계와 사회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가 있음
- 나. 교육부 위탁사업인 의무교육단계(초·중)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 사업(“꿈이음”)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다.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교육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안 제6조(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설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안 제7조(실태조사) 용어 변경 사항
  - 관련 상위 조례인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용어 일치를 통해 실효성 확보 및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2. 28.		공 포 번 호	제5694호

제안이유

- 2025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및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변경(안 제2조): 2025.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 총수 변경 : 4,470명 ⇒ 4,606명(136명 증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원 : 4,112명 ⇒ 4,130명(18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 정원 : 350명 ⇒ 468명(118명 증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2. 28.		공 포 번 호	제5695호

제안이유

- 지역별 진로·진학 지원의 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장에게 관할학교의 기초기본학력 증진 및 진로·진학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자 조례 개정

주요내용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관할학교의 기초기본학력 증진 및 진로·진학지도 업무 추가(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2. 28.		공 포 번 호	제5696호

□ 제안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기관)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문 일부 삭제(안 제2조제2항)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일부 삭제(별표)

기관명	현행	개정안	사유
비안도초등학교	도서 <나지역>	<삭제>	학교 폐지(예정)
어청도초등학교	도서 <나지역>		
위도초등학교식도분교장	도서 <나지역>		
개야도초등학교	도서 <다지역>		
선유도초등학교	벽지 <다지역>		
신시도초등학교	벽지 <다지역>		
신시도초등학교야미도분교장	벽지 <라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697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 관련하여 사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사군 간의 세출예산 비율의 유지 기간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관련 사군 통합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 발생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 도모

□ 주요내용

- 가.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기간(안 제3조)
  -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
- 나. 주민 지원 예산의 유지·확대(안 제4조)
  - 각 시·군의 직전 연도의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 된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
  - 주민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많은 시·군의 기준을 적용
- 다.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제9조)
  - 이행 상황 점검에 대해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둠
- 라. 지도 등(안 제10조)
  -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의 자문 등을 반영하여 통합 시·군의 장에게 개 선사항 등을 지도 또는 권고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698호

### □ 제안이유

-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육아시간 대상 확대 등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직종 개편( '13.12.12.) 이전 용어 등 문구 정비(안 제7조제1~2항)
- 나. 육아시간 대상 및 사용기간 확대(안 제23조제4항)
- 다.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 삭제(안 제23조제13항)
- 라.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23조제15항)
- 마.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안 제23조제18항)
- 바. 가족행복휴가 신설(안 제23조제24항)
- 사. 손자녀돌봄시간 신설(안 제23조제25항)
- 아. 배우자동행휴가 신설(안 제23조제26항)
- 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안 제23조제27항)
- 차.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별표3)
- 카.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관련 규정 정비(별표4)

##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699호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4.5.17)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하여  
조례 명칭 및 조문 용어의 일괄 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19개 조례
- 나. 문화재 관련 주요 용어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00호

□ 제안이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 문화재 관련 명칭 및 조문용어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제명 변경 및 용어 변경(안 제3조)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도자연유산

나. 빛방사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신설(안 제18조)

-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 여부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항공교통 기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심항공교통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정의(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도심항공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특자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안 제5조)
- 라.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 (안 제6조)
- 마. 연구소,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7조)
- 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01호

□ 제안이유

- 가. 인용법령 제명 변경(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4. 2. 20.)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24. 7. 1. 업무 이관(자치행정과→대외협력과)에 따라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기부자 예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 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인권담당관-4828, 2024. 10. 22.)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품위손상”)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용법령 제명 변경(안 제3조제3항제11호)
- 나.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제11조제4항 신설로 기존 조례에서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안 제9조)
- 다.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 소관 부지사로 변경(안 제13조)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2.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02호

제안이유

- 도민감사관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별 도민감사관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군별 도민감사관 구성 인원 변경(안 제3조)

- (기존) 2명 이상 5명 이하 → (변경) 2명 이상 9명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병철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1.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30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및 의원외교연맹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의원외교활동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14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11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책무에 관한 내용 변경(안 제3조) : 책무 대상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추가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08호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인구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한정수·박정규·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14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소방기관 안정적인 급식 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등 지원사업 구체화 (안 제4조)

의안번호 1299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중복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31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위임된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치안협력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나.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정종복·한정수·김대중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22호

□ 제안이유

-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 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한정수·정중복·전용태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3. 14.		공 포 번 호	제5732호

□ 제안이유

-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2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 다.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이병도 의원 (찬성의원 14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2.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17호

□ 제안이유

-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경제위기 개선방안에 대해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경제상황의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고,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경제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나인권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21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관련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장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발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27호

□ 제안이유

- 중앙부처별 분산 추진되는 외국인 관련 업무의 통합지원 및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른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외국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 나.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 근거 추가(안 제16조)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정수 의원 (찬성의원 14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09호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본 조례의 경우 위탁 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탁 갱신 규정 개정 (안 제4조)

##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정수·서난이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07호

□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본 조례의 경우 가족돌봄청소년이 13세부터 정의되어 정책에 소외되는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의 규정 개정 (안 제2조)

##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성수 의원(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16호

제안이유

- 화재 취약계층이 화재로 인해 주택 일부가 소실된 경우, 주택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이 조속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안심하우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나. 지원 범위에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을 포함함(안 제5조, 안 제9조)
- 다. 그 밖에 자구 수정, 위원회 등 일부 표현을 수정함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용근 · 나인권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2.	심 사 결 과	보류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가.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률 증가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매년 늘어나면서 피해 예방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나. 이에 급발진 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급발진 의심 사고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아. 협약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나.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박용근·전용태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3. 14.		공 포 번 호	제5733호

□ 제안이유

- 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농산어촌학교는 소규모화되고 농산어촌지역에서 폐교는 마을교육공동체 붕괴와 농산어촌 마을 슬럼화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이탈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나. 이에 농산어촌학교 폐교와 교육공동체 붕괴를 예방하고,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
- 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에 따라 농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어울림학교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나.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어울림학교 확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 다. 전북 농촌유학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2.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육성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 확충·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5. 7. 1. ~ 2025. 12. 31.(6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 위탁사무 :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 사무
  - 협동조합 상시상담, 설립·경영 컨설팅 및 교육·간담회 운영
  -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조합원 교육 및 자가진단 측정 지원)
  -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지원
  - 전북형 협동조합 선도모델 발굴·육성 및 도내 협동조합 간 협업성장 지원
  - 협동조합 설립 DB 구축 등 현황관리 및 정책제언 등
- 수탁기관 : 공개모집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4.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전북 대부분 시·군 지역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예정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정작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혜택은 수도권과 일부 기업들이 누리지만, 정작 전북도민들은 무리한 수목 벌채로 인한 산림파괴, 주변 경관의 훼손, 생태계의 교란, 재해 시 농경지 피해, 지역주민과 가축에 대한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과 지역발전 저해 등 심각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
- 다. 이에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를 구성하여 전북도내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도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나인권·김동구·김대중·김만기 김이재·서난이·이병도·강태창 김정기·김슬자·김성수 의원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28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도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바. 공동연구개발 추진 및 소비촉진 활동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난이·임승식·국주영은 의원(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10호

### □ 제안이유

- 급증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및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가임 시술 등을 지원하여 난임부부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 다. 난임치료시술비,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조 등 가임 및 난임 극복, 유산·사산 극복, 임신준비 등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전북권역 난임 및 임신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 아. 도내 민간 기업체 및 시·군에서 출산장려문화를 확산·정착시킬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병도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12호

□ 제안이유

- 도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지원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임대보증금등” 을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로 정의하여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신설)
- 나.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무주택가구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다.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대상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라.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대출계약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의 이자 범위로 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남이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13호

□ 제안이유

- 전세피해를 당한 주택임차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이주비를 지원함에 있어 기존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한정하던 것에서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호나목)
- 나. 전세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사목)
- 다. 종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만을 추진하였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
- 라. 기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해당 사업은 신설된 예방사업에 포함함(안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난이·임승식·국주영은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인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한 도내 여성에게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중단,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정종복 의원(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25호

□ 제안이유

- 사회·정치·문화적 다양성의 확산과 갈등의 심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민의 갈등 해결 능력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기본원칙, 추진 사업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며, 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변경함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 나. 민주시민교육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1조·3조)
- 다. 도민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형성 등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이념을 추가 규정함 (안 제2조)
- 라. 소속 공무원 및 지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추가 규정함 (안 제4조)
- 마.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명확하게 함(안 제6조)
- 바.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 규정함(안 제7조)
- 사.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비함 (안 제8조·9조)
- 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조항 신설함 (안 제10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수진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2.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03호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기존 지역방송 발전 지원 대상에 종합유선방송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도내 지역방송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에 종합유선방송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지원대상에 한국케이블TV 가입 여부 추가(안 제3조)
- 다. 위원 결격 사유에 한국방송협회과 한국케이블TV 가입 여부 추가(안 제 12조)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임승식·국주영은·황영석 김정수·오현숙·권요안 오은미·이정린 의원 (찬성의원 5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23호

□ 제안이유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신규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보조금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거주를 1년으로 단축하고, 농어업인 각각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제2항, 제7조제1항)

##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김정수·오은미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2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상품성이 부족한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촉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마.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정중복·김성수 의원 (찬성의원 16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04호

□ 제안이유

○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적용대상, 공공사용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라. 교육, 권장, 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정기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06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4조)
- 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요건 및 고시(안 제5~6조)
- 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및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안 제7~8조)
- 라.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10~13조)
- 바. 인가·허가 의제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4~15조)
- 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6~20조)
- 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3. 14.		공 포 번 호	제5734호

□ 제안이유

- 심리·정서적 이유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안 제4조)
-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라. 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진단검사(안 제6조)
- 마.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안 제7조)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김성수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3. 14.		공 포 번 호	제5738호

□ 제안이유

-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효율적인 한자 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명지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26호

□ 제안이유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방법 및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신설(안 제17조)
- 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신설(안 제18조)
- 다. 별지 서식을 규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 라. 용어 및 구성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6조)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20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제도를 구축하여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대체부품인증기관 정의 및 인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제6조, 제8조)
- 나.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제10조)
- 다. 대체부품인증 기준 및 인증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제12조)
- 라. 대체부품인증 표시 및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제14조)

##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2.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18호

□ 제안이유

-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및 취소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제 출 자	이병철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3. 14.		공 포 번 호	제5735호

### □ 제안이유

-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신도시 중심으로의 도시개발은 폐교 증가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른 폐교 활용 및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8조)
- 아.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한정수·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보류
본회의 심의	회 차	-		
	의 결 일 자	-	심 의 결 과	-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 나. 학부모회장의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연직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안 제5조제4항)

##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한정수·박정희·김대중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19호

□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보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전용대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3. 14.		공 포 번 호	제5736호

□ 제안이유

- 디지털 사회에 직면한 학생들이 사회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올바른 이해력 증진과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추어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
- 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 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
-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간사에 대하여 규정함
- 사. 협력체계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2.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2. 4.
	의 결 일 자	2025. 2.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3. 14.		공 포 번 호	제5738호

□ 제안이유

- 매년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세 이하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은 물론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하여 학생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함
- 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조)
- 다. 학교장은 등하교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함
-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

##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용근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2. 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2. 12.	이 송 기 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도내에 역사성과 복합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수리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존 계승과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을 통해 수리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건의하기 위함임

##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김성수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2. 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12.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이를 규탄하고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함임

##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된 2기 탄녹위 구성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희수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5. 2.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12.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대표성이 훼손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음.

나.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인바,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녹위 구성을 촉구하고자 함.

##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오은미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2.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12.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8만ha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ha의 농지를 전락 작물 등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부분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함.
-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우수 지자체는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거나 식량·농촌개발 정책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벼 재배면적 감축은 국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중심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대중·김동구·김만기·김이재 나인권·서난이·이병도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5. 2.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2. 12.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대규모 참사를 입은 제주항공 착륙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활주로 연장과 관련하여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 2,500m라는 전국 거점공항중 가장 짧은 활주로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바, 비상착륙상황을 대비해 활주로를 지금의 계획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나. 또한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후 더욱 활발해진 국내외 항공수요의 변화,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고,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의 목표이자 성과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대표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해야 함
- 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늘어나는 항공수요와 비례하여 항공교통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더불어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를 더욱 증대할 수 있도록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즉각 변경하여 새만금국제공항의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고, 공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서해안 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염영선·김슬지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12.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현행 철도교통망이 수도권 및 충청·동해안권에 집중돼 있는 데 반해, 호남 서해안권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로 일방적인 차별을 당해왔음.
- 서해안 철도망이 구축된다면 서해선-장항선-새만금선-서해안선을 이어지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며, 서해안 지역 주민의 인적·물적 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군산-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함.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슬지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2.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1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12.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음.
- 이번 거부권 행사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온전히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공교육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지방교육재정 과탄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거부권 행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재입법과 의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25. 2.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3. 7.		공 포 번 호	제5729호

□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물가상승 및 농어업인·축산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경기부양 및 농어업인·축산인의 경제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함

나. 이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의 정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의안번호 1341

##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25. 2.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위원 선임(안)

대상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비고
	현 재	변 경	
임종명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정기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2. 1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나.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인 바, 새만금 권역 내 3개 시군이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면서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새만금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다. 그러나 여전히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새만금특별지방자치체 구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임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2. 1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지난 12월 10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음.
- 그러나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3高(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과 환율 폭등으로까지 이어지며 국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됐음.
-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제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깎아내리고, 예산편성 때마다 탄죽을 걸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시장의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이 절실한 시점임.
- 이에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진작,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 등 정책적 효과성이 검증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한 조속한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됨.

##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명지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2. 1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고형연료제품(이하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한 때 유망한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았으나,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발전 시설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각종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관련 조치의 핵심인 SRF를 사용 제한 고체연료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 상 사용제한 고체연료 품목으로 SRF를 명시하고, 현행 사용제한 지역에 SRF 고활용 지역인 전북과 충남 등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등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함.

## 지방의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정수·오현숙·권요안·이정린 임승식·국주영은·이수진·윤수봉 김희수·장연국·김정기 의원		제 출 일 자	2025. 2. 1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통보함.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지방의원으로 구성하고 공모·외부추천방식을 병행하고, 출장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출장 시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각 지방의회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초 목적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규정이 일부 포함돼 지방의회는 조례 등 근거 규저을 개정하는 데 난처함을 표하고 있음.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예산 집행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고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등 국제활동에 대한 활동의 범위와 목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전용대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1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정부는 2015년, 면세경유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농업용 난방유 제도를 경유에서 등유로 대체하였으나, 경유보다 열효율이 낮고, 등유 대체 이후 그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최근 유가 상승 등 농업 현실을 반영하여 면세난방유 정책을 재검토하고 농촌현실에 부합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서난이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2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국무총리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이주아동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비인권적, 비인도적인 처사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
- 나. 정부는 2021년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 요건을 완화했으나, 이마저도 2025년 3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수많은 이주아동이 다시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여 있음
- 다. 이에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기본적인 인권과 보호를 보장하도록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상시화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기 위함임

##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성수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2. 2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와 학생 보호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냄
- 나. 사건 발생 직후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원의 건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다. 이에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대중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2. 2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2. 21.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2. 2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 제안이유

- 가.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소멸방지, 지방분권실현 등의 주요목적은 지속가능한 국가존속에 필요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 나.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자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구상 발표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인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불필요한 지자체 간 공공기관 유치경쟁만 가열되고 있음
- 라.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및 지역별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 1. 접수현황

○ 분야별

(2025. 1. 1. ~ 2025. 2.21.)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의	환경	산업	문화	농축	교통	도시	건설	건축	기타
					복지		경제	체육	수산		계획			
금회	1							관광						1
2025년 누계	1													1

○ 제출자별

구분	계	인원별					기관단체
		소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회	1	1	1				
2025년 누계	1	1	1				

####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리별					처리중
		소계	처리	불수리	취하	타기관 이송	
금회	1	1	1				
2025년 누계	1	1	1				

###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5. 2. 21.)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b>244</b>	<b>244</b>	<b>244</b>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2	12	12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11	11	11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9	9	9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5	15	15			
	교육위원회	70	70	70			
	기 타	127	127	127			
금회	소 계	<b>1</b>	<b>1</b>	<b>1</b>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교육위원회						
	기 타	1	1	1			
누계	소 계	<b>245</b>	<b>245</b>	<b>245</b>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2	12	12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11	11	11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9	9	9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5	15	15			
	교육위원회	70	70	70			
	기 타	128	128	128			

## Ⅳ.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4. 12. 14. ~ 2025. 2. 21.)

기관별	구 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율(%)	비고
	계	금 회	75	75		100
누 계		741	741		100	
전북특별 자치도	금 회	55	55		100	
	누 계	559	559		10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금 회	20	20		100	
	누 계	182	182		100	

###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4. 12. 14. ~ 2025. 2. 21.)

기관별	구 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계	금 회	75	10	13	11	24	14	0
누 계		741	164	114	139	184	118	0	22
전북특별 자치도	금 회	55	8	10	9	19	7		2
	누 계	559	148	85	120	158	32		16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금 회	20	2	3	2	5	7		1
	누 계	182	16	29	19	26	86		6

###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2. 7. 1. ~ 2025. 2. 21.)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846	1,846		
전북특별자치도	1,403	1,40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43	443		

###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2. 7. 1. ~ 2025. 2. 21.)

구 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 계	1,846	375	360	357	376	334	2	42
전북특별 자치도	1,403	332	285	318	338	98	2	3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443	43	75	39	38	236		12

### 5.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22. 7. 1. ~ 2025. 2. 21.)

구 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 계	4,234	891	830	812	974	675	4	48
전북특별 자치도	3,348	816	676	722	911	183	4	36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886	75	154	90	63	492		12